

서울특별시 금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6월 23일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9일, 김용술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5년 6월 23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이태원 참사, 대형 산불 등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며, 관련 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4조)
-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 드론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 공공부문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 드론의 안전 운용을 위한 교육과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병규

나.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금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전으로
- 동 제정안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 안 제6조에서는 드론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 안 제7조에서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 안 제8조는 드론의 공공부문 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활용 분야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하여,
 -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사업의 재정지원과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드론산업은 항공,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센서 등 첨단기술융합산업으로 재난·방재, 국토조사, 수송, 농·임업, 영상촬영, 취미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

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와 함께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임.

-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드론 산업육성을 위해 「제2차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2023. 6. 30 고시하였음.
- 이 조례안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우리 구의 드론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드론 안전교육 등은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안전사고 및 사생활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